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36
----------	------

발의연월일 : 2025. 2. 6.

발의자 : 윤준병 · 김현정 · 박희승

박홍배 · 김한규 · 김민석

정성호 · 진성준 · 문진석

박성준 · 정동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 육성된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 ·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등).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17.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

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식품등

나. 유전자변형농축수산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유전자변형식품등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표시의무자,”를 “표시의무자 및”으로, “및 표시방법 등에”를 “등에”로 한다.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비의도적 혼입식품등임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위 시험·검사의 대상물이 채취·선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증명서가 첨부된 시험·검사성적서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폐기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 1.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등
- 2.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전자변형식품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폐기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이 국민 건강, 농업,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비의도적 혼입식품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5.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u>유전자변형식품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u>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u>”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p> <p>가. <u>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u></p> <p>나. <u>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u></p> <p>17. “<u>비의도적혼입식품등</u>”이란</p>
<p><u>&lt;신 설&gt;</u></p>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

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식품등

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유전자변형식품등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  
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  
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

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  
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  
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  
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표시  
의무자 및-----등에----  
-----  
-----.

<신 설>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의도적흔입식품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비의도적흔입식품등임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또

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위 시험·검사의 대상물이 채취·선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증명서가 첨부된 시험·검사성적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신 설>

제12조의4(폐기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등

2.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유전

### 자변형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접유자가 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전자변형식품등 소유자 또는 접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폐기기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기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이 국민 건강, 농업,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

<신 설>

소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제97조(별 칙) -----  
-----  
-----

의 벌금에 처한다.	-----.
1. <u>제12조의2제2항</u> ,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1. <u>제12조의2제3항</u> , 제1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 ----- ----- -----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